**2022년 11월 17일자 통합이사회의 결의 - RDC 제760호**

**(2022년 11월 17일 연방관보 제216-A호에 고시)**

70% p/p(70%, 중량 기준으로 표시) 농도의 에틸 알코올을 액체 물리적 형태로, Anvisa에서 정식으로 규정하여, 무료 판매 및 기증을 특별히, 일시적으로 승인한다.

**국가보건규제청(Anvisa) 청장인 본인**은 1999년 1월 26일자 법률 제9,782호의 제16조 III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, 또한 2021년 12월 10일 통합이사회 결의 - RDC 제585호에 의해 승인된 내부 규정 제172조, IV 및 제187조, VI의 규정을 고려하여, 통합이사회의 다음 결의를 잠정적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며, 이의 고시를 결정한다.

제1조. Fica는 70° INPM(국가측량원의 70도)에 해당하는, 70% p/p(70%, 중량 기준으로 표시) 농도의 에틸 알코올을 액체 물리적 형태로, Anvisa에서 정식으로 규정하여, 무료 판매 및 기증을 특별히, 일시적으로 승인한다.

제2조. 본 결의의 제1조 머리 부분에 언급된 제품은 개인위생용품, 방부제, 살균제, 고정 표면 또는 중요하지 않은 품목을 위한 병원 소독제 및 또는 의약품으로 규정한다.

제3조. 본 결의는 90(구십)일 동안 유효하다.

제4조. 본 결의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안토니우 바라 토레스**

**이사회 의장**